

#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능)**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의 당해년도 등록금 결정에 관한 사항
2. 그 밖의 등록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3조 (구성)** 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원·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,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등록금심의위원회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**제4조 (위촉)** ① 교내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과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를 총장이 위촉한다.

1. 교,직원을 대표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총장이 위촉한다.
2. 학생을 대표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총학생회 및 총원우회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3.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를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5조 (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)** ①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.

- ② 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③ 간사는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6조 (임기)**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7조 (회의)** ① 회의는 제2조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
-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소집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공고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 (협조요청)** 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등록금채정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대학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9조 (회의록)** 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열람을 받아야 한다.

**제10조 (비밀유지)**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**제11조 (준용)**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.